

# 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內事件

## 商標登錄無効

〈大法院 第2部 判決〉(1985. 2. 26)

事件番號: 84후 3

裁判長: 김 형 기

關與法官: 정 태 균 · 이 정 우 · 신 정 철

1. 審判請求人 (上告人): (株) 락 키 (代表: 具 滋 學)
2. 被審判請求人 (被上告人): 콜게이토-파아프 올리버 캄파니 (代表: 헤를드 오브스트러)
3. 原審決: 特許廳 1983. 12. 27字, 1981年 抗告審判(當) 第54號 審決
4. 主 文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訴訟費用은 被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
5. 理 由: 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原審決 理由에 의하면, 原審은 이 事件 登錄 商標는 英文 大文字만으로 “MF P”라 暎서하여서된 文字商標로서 商標構分 第13類의 치약과 치약의 배합제를 그 指定商品으로 하여 1964年5月29日 出願하여 1964年12月29日 登錄되었으며 1974年2月12日 更新登錄 出願하여 1975年2月10日 更新登錄을 마친 것으로, 이 事件 商標인 “M. F. P”는 齒質強化劑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이미 學系에서나 一般社會의 상당 분야에서 通用되고 있는 “M. F. P”와 동일하여 위 약칭을 이 事件指定商品인 齒藥과 齒藥의 배합제의 商標로 使用한다면 결국 指定商品의 品質, 原材料, 效能만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商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事件 商標는 商標法 第8條 第1項 第3號에 해당하여 商標로서 登錄받을 수 없는 데도 更新登錄한 것은 無效라고 判斷하고 있는 바, 記錄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認定判斷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査證 법칙 위배나 商標法의 法理를

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, 原審이 위 M. F. P가 치질 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-Phosphate의 약칭으로 인정한 資料인 갑제2호증 같은 제3호증(刊行物) 같은 제4호증(英國 特許明細書)과 화학사전(The Condensed Chemical Dictionary) 약전(The Extra Pharmacopoeia) 등은 該 發行日이 該 事件 更新登錄査定時期를 基準하여 該 이후의 것이라 하더라도 該 資料등에 依하여 MF P의 用語가 該 査定日 當時 通用되고 있었다고 認定하지 못할 바 아니고 또한 該 事件登錄商標와 같은 商標가 日本國 및 美國 등 다른 나라에서 登錄되고 있어 특별 현저성이 있다고 하나 다른 나라에서 登錄되었다 하여 우리 商標法上의 登錄要件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理由없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該 소자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. ㉠